

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의사상자 등  
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3 월 7 일

여 수 시 장  인



여수시 조례 제2177호

붙임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.

1.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

2.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관내에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, 제2호만 적용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.

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, “내에서다음”을 “내에서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1천320만원”을 “1천 32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1천140만원”을 “1천 14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항제1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현행	개정안
<p>2.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<u>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</u>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<u>내에서</u> 다음 금액 각 목의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2급: <u>1천320만원</u></p> <p>다. 3급: <u>1천140만원</u></p> <p>라. ~ 자.</p> <p>3. ~ 9. (생략)</p> <p>② <u>제2항제1호</u>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.</p>	<p>2. ----- -----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----- ----- <u>내에서</u> 다음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 <u>1천 320만원</u></p> <p>다. ---- <u>1천 140만원</u></p> <p>라. ~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4조제1항제1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